

1. 개정이유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요건, 벤처투자조합의 등록기준 등 투자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요건 완화(안 제5조제1항)

개인투자조합이 지방 소재 초기창업기업에 50% 이상 투자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이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 한도 확대 완화

나. 벤처투자조합의 등록기준 완화(안 제24조제2항)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과 인수·합병을 통해 운용중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 시, 등록일 기준 요건 완화

다. 조문 정비(안 제15조)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를 인용하는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4. 18. ~ 5.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단서 중 “다만,”을 “다만, 개인투자조합 결성액 대비”로, “개인투자조합 결성액의 30퍼센트를”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수도권 외에 소재한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에 20퍼센트 이상 출자하는 경우 : 49퍼센트

나. 수도권 외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수도권 외에 소재한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에 20퍼센트 미만 출자하는 경우 : 40퍼센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 30퍼센트

제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제1항제7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조합은 수도권 외에 소재한 초기창업기업에 대하여 제1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으로 산정할 것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6조제4호”를 “영 제16조제4호 및 제17조제3호나목 본문”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회”를 “총회 개최일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록 신청을 승인한 조합원 총회(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운용 중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 이후에도 벤처투자회사가 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운용을 계속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의사록 사본”을 “의사록 또는 조합원 총회 의사록 사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법인세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서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법인. 다만, 법인의 총 출자금액은 <u>개인투자조합 결성액의 30퍼센트를</u> 초과할 수 없다.	7. ----- ----- ----- ----- -----.
	다만, <u>개인투자조합 결성액 대비</u> ----- <u>다</u> <u>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u> <u>을</u> -----.
<u><신설></u>	<u>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u> <u>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u> <u>(이하 “수도권”이라 한다)</u> <u>외의 지방자치단체, 「지</u> <u>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u> <u>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u>

<신 설>

<신 설>

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수도권 외에 소재한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에 20퍼센트 이상 출자하는 경우 : 49퍼센트
나. 수도권 외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수도권 외에 소재한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에 20퍼센트 미만 출자하는 경우 : 40퍼센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 30퍼센트

8. ~ 10. (생략)	8. ~ 10.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기준)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기준)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제5조제1항제7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조합은 수도권 외에 소재한 초기창업기업에 대하여 제1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으로 산정할 것
제15조(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 영 제16조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 영 제16조제4호 및 제17조제3호 나목 본문-----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삭제	제2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②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② ----- -----

을 결성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벤처투자조
합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 총회 개
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4. 결성 총회 의사록 사본
5. ~ 8. (생략)
- ③ ~ ⑥ (생략)

----- 총회 개
최일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록
신청을 승인한 조합원 총회(벤
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
조합을 운용 중인 유한회사 또
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신기술사
업금융업자등과 합병하는 경우
로서 합병 이후에도 벤처투자회
사가 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운용을 계속하기 위해 벤처투자
조합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
다) ---.

1. ~ 3. (현행과 같음)
4. ----- 의사록 또는 조합
원 총회 의사록 사본
5. ~ 8. (현행과 같음)
- ③ ~ ⑥ (현행과 같음)